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돈농장에서 총 21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년 10월 첫 발생 이후 발생지역이 지속 확산되면서, 접경지역 및 인근 27개 시군에서 총 2,300여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도,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보은군, 충주시와 경상북도 상주시, 울진군, 문경시에서도 검출되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 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,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, 내부 울타리,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. 22. ~ 2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3호가목 단서 중 “내부 울타리”를 “외벽을 내부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는 내부울타리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“내부 울타리는”을 “내부울타리는 지면에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”로 한다.

다.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이거나 평상 형태의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

별표 1의10 제2호가목(2)의 방역시설 (다) 본문 중 “차량, 동물”을 “차량 및 야생동물”로, “있는 울타리 시설”을 “있도록 외부 울타리”로, “설치하되,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”을 “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”로 하고, 같은 (다)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(다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에 1)부터 4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차량은 (라)의 내부 울타리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.

- 1)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, 담장은 콘크리트,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
- 2)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.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,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
- 3)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
- 4)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. 다만,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·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별표 1의10 제2호가목(2)에 방역시설 (라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란 (라)에 1)부터 3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란에 (마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란 (마)에 1)부터 4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란에 (바) 및 (사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란(사)에 1)부터 5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란에 (아)부터 (카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란 (카)에 1)부터 2)까지

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라) 내부울타리는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(사료빈)의 외곽에 설치하되,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. 다만,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외벽을 내부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내부울타리를 각 사육시설별로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실을 방역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1) 내부 울타리는 지상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또는 사람이 쉽게 넘어 다니기 어려운 높이로 설치하고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으며 사육시설과 1.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, 사료보관통(사료빈)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. 다만,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.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.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.

2)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. 다만, 차량이 내부 울타리 내로의 진입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·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3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기가 현저히 어렵

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내부울타리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정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.

(마)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,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(이하 “출입자”라 한다)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

1)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: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

2)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: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

3)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 · 신발 · 장갑(1회용을 포함한다)을 갖추어 둘 것

4)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,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

(바) 약품,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, 천막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. 다만,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, 마호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(사) 손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사육시설 각 동별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. 다만, 사육시설이 1개 동만

있는 경우로서 (마)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- 1)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, 사육시설과 구획·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전실의 설치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각 사육시설 앞에 전실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할 수 있다.
 - 2)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이거나 평상 형태의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
 - 3)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
 - 4)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(또는 신발을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)하고,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,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
 - 5)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
- (아) 새, 쥐,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·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, 환기구, 환기설비 및 배수구

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, 다만, 사육시설
에 방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포충등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
방충장비를 구비할 것

(자) 새,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
풍기, 환기구,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,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
모든 곳에 설치할 것

(차) 가축의 폐사체,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
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, 축산 관련
폐기물 관리시설의 내·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
구를 갖추어 둘 것

(카)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
하대를 설치하되,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
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,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
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

1)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

2)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
록 설치할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이 규칙 별표 1의10 제2호가목(2) 돼지사육업의 방역 시설 중 (사)의 “전실”의 면적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 제1항제2 호다목9)에 따른 가축사육시설(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 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)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보 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이 규칙 별표1의10 제2호가목(2) 돼지사육업의 방역시설 중 (차)의 “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” 관련 규정은 이 규칙을 시행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.

③ 이 규칙 별표 1의10 제2호가목(2) 돼지사육업의 방역시설 중 (라) 의 3)과 (사)의 1) 단서 조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검역본부장과 협의 하여 돼지사육업자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 획서를 제출받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간동안(2년 이내) 적용한 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